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기덕,
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
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
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
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
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
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
, 유정희, 윤영희, 이상욱,
이숙자, 이영실, 이종배,
이종태, 정준호, 최민규,
최재란, 허 훈, 홍국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이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유상기증과 무상기증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다. 수증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의3 신설).

라. 수증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준용한다”를 “준용하되,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”를 “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”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수증심의위원회)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

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매 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
2.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
3.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실무위원회·평가위원회·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”를 “실무위원회, 평가위원회, 수증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료 기증) ① (생 략)	제4조(자료 기증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. 단, 무상기증은 <u>자료 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</u>	② ----- <u>준용하되, 예비평가는 수증심의 위원회가 한다. ----- 수증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 부를 ---.</u>
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수증심의위원회) ① 기 <u>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.</u> ② <u>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 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</u> ③ <u>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</u> ④ <u>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

<신 설>

1.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
2.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
3.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
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
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
니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
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실무위원회·평가위원회·
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
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
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
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
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
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
우

제9조(수당 등 지급) 실무위원회
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
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
범위 안에서 수당, 출장비 및 심
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
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
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
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
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
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
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
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
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
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
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 지급) 실무위원회,
평가위원회, 수증심의위원회--
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
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-----.

--.